

영등포구의회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4. 4. 11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82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 일부개정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(안 제24조제4항 단서)
 -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 부여
- 나.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경력직공무원에게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에 대한 연가 가산(안 제18조의2)
 - 재직기간 2년 미만이고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있을시 연가 2일 가산

다.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(안 제 24조제10항)

-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,
-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,
- 30년 이상 : 20일

라.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등 별도 규정 신설(안 제24조의2)

마. 경조사 휴가 대상자 중 사망시 휴가일수 및 휴가대상자 범위 확대(안 별표 3)

-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: 2일에서 3일로 확대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: 1일 부여
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: 1일 부여

바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(대통령령)의

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을 확대하고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▷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 반영

- 안 제18조의2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 사항을 반영하였고,
- 안 제19조에 임신·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산정시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24조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 하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25조에 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’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’ 조항을 신설하였음.

▷ 공무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및 특별휴가 신설

- 안 제24조제1항에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의 특별휴가 일수를

신설하였으며,

- 안 제24조제14항에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각각 20일간의 장기재직 특별 휴가를 신설하였음.
-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.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,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 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경조사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복무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, 휴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,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다만 2013년 12월말 기준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1,431명 중 10년 이상 재직자인 공무원이 903명¹⁾(63.1%)으로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현황 파악과 적절한 휴가일정을 안배하여 장기 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우려와 대직근무자의 업무하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됨.

- 참고로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서울시 및 11개 자치구²⁾에서,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서울시 및 10개 자치구³⁾에서 우리구의 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 시행중에 있음.

1) 10년이상 20년미만 : 203명, 20년이상 30년미만 : 533명, 30년이상 : 167명

2) 중, 성동, 동대문, 중랑, 강북, 노원, 동작, 관악, 서초, 강남, 강동구

3) 성동, 성북, 노원, 은평, 서대문, 양천, 강서, 관악, 송파, 강동구

참 고 자 료

1 지방공무원법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12.31]

2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3.12.11. >

③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3.5.31. >

[전문개정 2010.7.15.]

제7조의5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)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7조, 제7조의3제6항 및 제7조의4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. <개정 2013.12.30. >

[본조신설 2013.12.11.]

[제목개정 2013.12.30.]